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

李 康 美*

I. 머리말

II.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形態

1. 自然的 定義 및 合法性의 問題에 관한 司法的 審查
2. 仲裁判定의 是非에 관한 司法的 審查

III.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의 實定法上 事由

1. 韓國 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查事由
2. 美國 聯邦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查事由
3. UNCITRAL 모델國際商事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查事由

IV.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의 判例法上 事由

1. 仲裁判定이 法律을 明白히 無視한 경우
2. 仲裁判定이 公序良俗에 直接 抵觸되는 경우
3. 仲裁判定이 任意의이고 변덕스러운 경우
4. 仲裁判定이 完全히 不合理한 경우
5. 仲裁判定이 當事者들의 基礎契約으로부터 契約의 本質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

V. 맷음말

* 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중재는 본질적으로 분쟁해결의 계약제도로서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 또는 앞으로 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한다. 계약상의 해결로서 중재는 적어도 당사자자치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 적용된다.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을 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법제도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원칙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중재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원칙은 중재판정이 최종적이어야 하며 중재판정의 시비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어도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인 것이다.

만약 중재절차가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면 중재인이 사실 또는 법률의 면에 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채비가 되어 있다. 결국 판사도 또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모든 법원의 항소체계는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한 것이고 상급심 판사의 견해로 예심판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이와 같은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업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제거하는 것을 중재의 커다란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당사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분쟁해결의 최종성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항소절차의 회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엄격한 소송절차가 아닌 편의한 간이절차에 따라 중재인이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공격방어의 절차를 불공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절차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은 국가법질서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다.

한편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에 대하여 국가도 또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원들은 적어도 법률문제가 관련되는 한 그들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심사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의 통일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재의 최종성의 소망과 사법적 심사의 필요에 대한 상충하는 견지는 중재와 법원들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째 상사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의 2가지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둘째 사법적 심사의 설정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한국중재법, 미국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및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¹⁾ 관련규정과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셋째 사법적 심사의 판례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미국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査形態

1. 自然的 定義 및 合法性의 問題에 관한 司法的 審査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에는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것들은 실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두지 않으면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²⁾

사법적 심사의 첫째 형태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요건이 중재절차에서 준수되었는가 여부와 중재계약이 당사자들의 준거법률에 의거 유효한 것인가 여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법적 심사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는 때에 그들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법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 및 국내중재법들은 때때로 중재판정이 자연적 정의 또는 합법성의 기본요건을 무시하였다는 근거로 관할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34조 2항, 한국중재법 제13조 및 미국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등이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다.

1)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June 21, 1985)

2) Clive M. Schmitthoff, Fi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Judicial Review, Clive M Schmitthoff's Select Essays o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Chia-Jui Cheng,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 655

2. 仲裁判定의 是非에 관한 司法的 審查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의 둘째 형태는 판정의 시비에 관한 것으로서 중재인이 판정에 오류를 범했는가 여부의 문제이다. 판정의 시비에 관한 심사는 중재판정부 내 중재인의 결정에 대한 불복인 것이다. 따라서 검토될 문제는 중재기구의 체제 내에서의 불복절차가 아니라 사법적 심사를 위한 중재판정부로부터 법원으로의 불복이다.

판정의 시비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인정은 중재절차의 소송절차에의 종속이며 또한 중재절차의 최종성에 대한 개입인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에 의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의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정의 시비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인정문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법제도는 차이가 있다.³⁾ 미국법률, 국제무역중재에 관한 최근 프랑스법률, 스웨덴법률 및 UNCITRAL 모델법 등은 판정의 시비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협약(Swiss Concordat)은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제36조 f항에서 중재판정이 서류에 나타난 사실과 명백히 반대되는 사실인정에 근거되었다는 것 또는 그것이 명백한 법률 또는 형평법의 위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임의적이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중재판정 무효소송이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률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분하여 사실에 대한 중재인들의 인정은 최종적이지만 법률에 대한 중재인들의 재정은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법률간의 구별은 항상 명백하게 그어지지 않으며, 법원들은 사실과 법률이 혼합된 문제들의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여야 했다.⁴⁾

3) Clive M Schmitthoff, *supra note 2*, pp.659~660.

4) The Effy [1972] 1 Lloyd's Rep. 18, at 34

III.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의 實定法上 事由

1. 韓國 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查事由

우리나라 중재법에 의하면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는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②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④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당사자간에는 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중재판정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즉 ⑥ 중재판정에 관여한 중재인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별한 때, ⑦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을 때, ⑧ 중재판정의 증거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일 때, ⑨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중재판정의 증거가 될 때, ⑩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⑪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의 사실이 중재법 제13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일 경우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것이다.⁵⁾

위와 같은 중재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재인의 선임이 중재법이나 중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절차의 적용이 중재법에 반하여 행해진

5)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p 181

경우, 예를 들면 중재심문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당사자의 중요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부여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면, 대한민국 조달청 v. 화성전기주식회사 사건⁶⁾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원고와 피고간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① 당해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이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일반조건 제12조는 설계변경절차에 관하여, 동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는 설계도와 설계공사 현장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경위로 지출한 추가공사비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문제에 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13조에서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련된 분쟁은 동일반조건 제31조에서 정하는 당사자의 합의나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한국중공업주식회사 v. 금성전선주식회사 사건⁷⁾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중재의 제14차 심문기일은 1990. 1. 11. 14:00에 시작되어 심문후 종결되었는데, 3인의 중재인 중 1인이 위암으로 인하여 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망함으로써 위 중재심문 종결시부터 중재판정시까지 3인 중재인들 사이에 중재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14차 심문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중재인 1인이 불참한 채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종결을 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동의를 나머지 2인의 중재인만

6)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3민사부 1996. 10. 23 선고, 96가합3570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것이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판결

으로 중재판정을 하는 것까지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밖에 달리 위와 같은 2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3인의 중재인 중 2인의 중재인만이 관여하여 한 것으로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무능력자인 당사자 또는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대리인이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절차를 수행한 경우 예를 들면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권의 결격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셋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행위를 명하는 등의 불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넷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조사에 입회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또는 중재판정에 이유의 요지를 붙였다 하더라도 판정주문과 이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면, 주식회사 LG 상사 v. 인도국 Prestige H. M. Polycontainers Limited 사건⁸⁾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라 함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께 있어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할 것인가는 중재인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증거의 채택 또는 배척의 이유를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8)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민사부 1996. 11. 14 선고, 96가합4856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출한 물품이 수출계약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것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 또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대한알미늄공업주식회사 v. 동양마샬주식회사 사건⁹⁾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된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영업이익이 원고가 성공 보증을 특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시한 다음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한 기대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의 기재 없이 그 금원 상당액이 예상된 영업이익의 손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가 불명료하여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거나 이유가 모순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영창설업교육주식회사 v. 스카이하이 패션즈 퍼티와이 리미티드 사건¹⁰⁾에서 대법원은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이유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난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한 점이 있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수출한 이

9)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민사부 1997 4 22 선고, 96가합4344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가 피고와의 용역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것이 허위진술에 의한 판정이고,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이유가 불비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10) 대법원 1986 6 13 선고, 88다카163, 184 판결

사건 핸드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수입한 가격에서 피고가 일괄하여 처분한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공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 반액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규정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의 사실의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비~~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중재판정의 증거로 된 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대한알미늄공업주식회사 v. 동양마샬주식회사 사건¹¹⁾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중재판정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포함하여 만약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정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서, 중재사건에서 증인들의 각 증언 중 일부 허위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배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여섯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주식회사 LG상사 v. 인도국 Prestige H. M. Polycontainers Limited 사건¹²⁾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정이 유종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인 피신청인과 피고인 신청

11)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민사부 1997. 4. 22 선고, 96가합43442 판결.

12)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민사부 1996. 11. 14 선고, 96가합48560 판결.

인간의 수출계약의 조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에서 신청인인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신청인인 원고가 수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 판단 중에는 피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한알미늄공업주식회사 v. 동양마샬주식회사 사건¹³⁾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정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쌍방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계약불이행 책임의 정도를 3대 7의 비율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중원건설 v. 한국전력공사 사건¹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위에 나온 3건의 판결 모두를 들어 기판력의 항변을 한 데 대하여 중재판정문에서 피고의 주장내용을 인용 설시하면서 그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누락부분을 포함한 피고의 기판력 주장전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에서 인용한 피고 주장 가운데 본안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 “……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라는 부분과 “…… 위 조치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 ”라는 표현이 있음에 비추어 앞에 나온 판결 중 유일한 본안판결인 동부지원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 피고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판단내용상에 소홀함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¹⁵⁾ 이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13)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민사부 1997. 4. 22 선고, 96가합43442 판결

1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판결.

1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1990. 2. 13 선고, 89재누 106 판결; 1990. 3. 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등 참조

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판단유탈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美國 聯邦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査事由

미국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제10조 a항은 상사중재판정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4가지 한정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 판정이 내려진 지역내의 미국법원은 중재의 일방당사자의 신청시에 판정을 파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① 판정이 부패(corruption), 사기(fraud) 또는 부당한 수단(undue means)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② 중재인들 또는 그들 중 하나에 명백한 불공평(partiality) 또는 부패가 있는 경우, ③ 중재인들이 충분한 이유가 제시된 때에 심문의 연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분쟁에 관련된 실질적 증거의 심문을 거부하는 데 위법행위의 죄가 있거나 또는 일방당사자의 권리들이 침해된 기타 부정 행위의 죄가 있는 경우, ④ 중재인들이 그들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불완전하게 행사하여 내려지지 못한 경우 등이다.¹⁶⁾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1, 2 및 3호에 규정된 중재판정 파기의 사유들은 현재 법원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중재인이 심문 및 예비심문단계에서 판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¹⁷⁾ 또한 이러한 사유들은 상사중재절차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당사자, 변호인 및 중재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며, 중재판정 및 판정이유의 정확에 관련되는 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1, 2 및 3호에 규정된 사유로 상사중재판정이 파기 되기 위하여는 부적당함에 대한 단순한 외관이상으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하고 확신적인 증거에 근접하는 정도에 달하는 행위의 증명¹⁸⁾ 그리고 추정된 위법행위와 중재인의 결정사유간에 연계 또는 중대한 관계의 논증이 모두 있어야 한다.¹⁹⁾

16) 미국 통일중재법(Uniform Arbitration Act) 제12조는 연방중재법 제10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49개주에서 채택되고 있다

17) Remmey v. Painewebber, Inc., 32F. 3d 143, 147-49 (4th Cir. 1994), cert. denied, U.S., 115 S. Ct. 903(1995).

18) Arizona Elec. Power Co-op v. Berkeley, 59F. 3d 988, 993 (9th Cir. 1995)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4호에 규정된 중재판정 파기의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왔는바.²⁰⁾ '중재인들이 그들의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중재인의 권한은 전적으로 계약상의 것이고,²¹⁾ 중재인이 당사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만 판정을 파기할 수 있다.²²⁾ 더욱이 이 규정은 판정의 시비를 심사할 권한을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²³⁾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에 의해 규정된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데에 법원들간의 불일치는 없다.²⁴⁾ 그러나 많은 연방순회항소법원들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들의 상사중재판정에 대한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²⁵⁾

3. UNCITRAL 모델國際商事仲裁法上의 司法的 審查事由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국제상사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이다. 즉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부적격인 사실 또는 당해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그 준거법으로서 선택한 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② 신청을 한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자신의 사안을

19) A G Edwards & Sons, Inc. v McCollough, 967 F 2d 1401, 1404 (9th Cir 1992)

20) Fabnestock & Co v. Waltman, 935F 2 ci 512, 515-16(2d Cir), cert denied, 502 U S 942, 112 S Ct 380 (1991); Davis v. Chevy Chase Financial Ltd , 667 F 2d 160, 165 (D.C Cir 1991)

21) Davis v Chevy Chase Financial Ltd., 667 F 2d 165 (D.C. Cir 1981)

22) Eljer Mfg . Inc v Kowin Development Corp., 14F. 3d 1250, 1255-56 (7th Cir. 1994)

23) Ibid

24) Forsythe, Int'l SA v Gibbs Oil Co of Taxas, 915 F 2d 1017, 1022 (5th Cir. 1990)

25) Bowles Financial Group Inc v Stifel, Nicolaus & Co , 22F 3d 1010 (10th Cir 1994)

주장하지 못한(방어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중재판정이 중재부탁합의의 조건에 의하여 의도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을 취급하는 사실, 다만 중재에 부탁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되지 아니한 시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의 일부만이 취소될 수 있는 사실,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만 당해합의는 당사자의 행위로 이 법의 일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이 법의 규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이다. 즉 ①분쟁의 주체사항이 당해국가의 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실, ②중재판정이 당해국가의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사실 등이다.

위와 같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동법 제36조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며, 제36조의 규정은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New York Convention)」 제5조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중재판정 취소의 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동법 제33조(중재판정문의 정정 및 해석, 추가판정)에 의하여 요청을 하였을 경우, 당해 요청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해결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중재판정 취소의 신청을 할 수 없다(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34조 제3항). 한편 중재판정 취소의 요청을 받은 법원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적당한 것일 경우로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절차를 재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가 그 판정의 취소의 사유를 배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행동을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재판정 취소절차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34조 제4항).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34조의 규정은 일부국가들에 의하여 동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수용하고 있다. 즉 스위스의 예를 따라서 튜니지아는 튜니지아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하여 제34조에 의한 불복의 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반면에 뉴질랜드는 정반대로 당사자들이 법률문제에 대하여 항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기, 매수 및 자연적 정의의 위반을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정확한 접근은 오직 이러한 사유들이 모델법의 공서양속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 뿐이다.²⁶⁾

IV. 商事仲裁判定의 司法的 審查의 判例法上 事由

미국의 많은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들은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사중재판정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비실정법적 사유들을 몇 가지 인정하여 왔다. 즉 상사중재판정이 ①법률을 명백히 무시한 경우(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②공서양속에 직접 저촉된 경우(direct conflict with public policy), ③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arbitrary and capricious), ④완전히 불합리한 경우(completely irrational), ⑤당사자들이 기초계약으로부터 계약의 본질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fails to draw its essence from the parties' underlying contract) 등에 파기판결이 내려졌음이 관련 판례법의 검토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미국 다수 연방순회항소법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판례법상의 중재판정 파기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仲裁判定의 法律을 明白히 無視한 경우

법률의 명백한 무시(manifest disregard of the law)가 기본적인 상사중재판정의 파기사유로 인정된 것은 1953년 Wilko v. Swan사건²⁷⁾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중재인들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연방중재법 제10조에 의한 판정의 파기사유를 구성하되,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법률의 명백한 무시가 아닌 중재인들에 의한 법률의 해석 잘못은 연방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대법원의 견해는 상사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가 연방중재법 제

26) Gerold Herrmann, Adoptions of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한국중재학회 초청강연회 1997.10.25, p.20

27) Stephen L. Hayford and Scott B. Kerrigan, “Vacatur: The Non-Statutory Grounds for Judicial Re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Dispute Resolution Journal,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October 1996, p.23.

28) 346 U.S. 427, 436, 74 S.Ct. 182, 187 (1953)

10조 a항에 규정된 4가지 실정법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미국의 일부 순회항소법원들에 의하여 널리 인용되어 왔다.

미국 판례법에 의하면 법률의 명백한 무시는 법률에 관한 명백한 오류나 오해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²⁹⁾ 더욱이 중재인들에 의해 무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준거 법은 충분히 정의되고, 명시되고 또한 명백하게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³⁰⁾ 또한 법률의 명백한 무시는 중재인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때에 발생한다.³¹⁾

중재판정의 파기를 위한 '법률의 명백한 무시'의 사유는 그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으로부터 중재판정의 시비를 효과적으로 격리시키는 경우에만 합법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법률의 오류 즉 법률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인이 법률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중재인의 법률해석과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중대한 결합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오직 법원이 중재인의 법률해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³²⁾

2. 仲裁判定이 公序良俗에 直接 抵觸되는 경우

미국의 일부 순회항소법원들은 법원이 법률 또는 판례에 구체화된 잘 정의되고 통용되는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저촉되는 상사중재판정의 파기를 허용하는 판례법상의 판정 파기사유를 인정하고 있다.³³⁾ 이것은 공서양속 또는 법률에 우반되는 계약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의 보통법상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이다.³⁴⁾

Paine Webber, Inc. v. Argon 사건³⁵⁾에서 제8순회항소법원은 분쟁세약이나

29) Kanuth v. Prescott, Ball & Turben, 949 F. 2d 1175, 1182 (D.C. Cir. 1991)

30)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v. Bobker, 808 F. 2d 930, 933 (2d Cir. 1986)

31) San Martine Compania De Navegacion v. Saguenay Terminals Ltd., 293 F. 2d 801 (9th Cir. 1961).

32) Stephen L. Hayford and Scott B. Kerrigan, *supra* note 23, p.81

33) Painewebber, Inc. v. Argon, 49 F. 3d 347, 350 (8th Cir. 1995)

34) Seymour v. Blue Cross/Blue Shield, 988 F. 2d 1020, 1023 (10th Cir. 1995)

35) 49F. 3d 347 (8th Cir. 1995).

관계법률에 대한 중재인의 해석 및 적용이 부정확하여 소정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저촉되거나 또는 위반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이 파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Arizona Elec. Power Co. v. Berkeley 사건³⁶⁾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중재판정결과의 이행명령이 당사자 쌍방으로 하여금 소정의 공서양속을 위반할 위치에 두는 경우에 중재판정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중재판정의 파기사유로서 '공서양속에 직접 저촉하는 경우'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계약상 합의한 분쟁의 시비에 법원 스스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합법성을 가지게 된다. 중재판정의 파기사유가 되는 공서양속의 위반은 중재인이 법률을 잘못 해석 또는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정의 이행을 강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³⁷⁾

3. 仲裁判定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의 최근견해에 의하면 상사중재판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판정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Ainsworth v. Skurnick 사건³⁸⁾에서 제11순회항소법원은 중재인의 결정근거가 그 사건의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rown v. Rauscher Pierce Fernses, Inc. 사건³⁹⁾에서 제11순회항소법원은 중재판정의 파기사유로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인이 신뢰할 수 있었던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반박할 책임은 파기를 신청한 당사자측에 있으며, 만약 불복신청된 판정이 합리적이거나 적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에 규정된 4가지 실정법상의 파기사유가 적용되며, 이러한 판례법상의 파기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판정의 파기

36) 59F 3d 988 (9th Cir 1995)

37) Stephen L Hayford and Scott B. Kerrigan, *supra note* 23, p.82

38) 960 F 2d 941 (quoting Rainford v. Merrill Lynch, 903 F 2d, 1410, 1413 (11th Cir 1990))

39) 994 F 2d 775 (11th Cir 1993)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판정이 대폭적으로 법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재계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仲裁判定이 完全히 不合理한 경우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1972년 *Swift Industries, Inc. v. Botany Industries, Inc.*⁴⁰⁾에서 처음으로 중재판정의 과기사유로서 '완전히 불합리한 경우'를 인정하였으며, 중재판정이 근본적으로 합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으나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French v.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사건⁴¹⁾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중재판정이 완전히 불합리한 경우라 함은 중재판정부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적용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仲裁判定이 當事者들의 基礎契約으로부터 契約의 本質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Anderman/Smith v. Tenn. Gas Pipeline Co.* 사건⁴²⁾에서 중재인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계약으로부터 본질을 끌어내는 한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또한 명백히 계약으로부터 본질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중재판정이 적어도 계약의 용어 또는 목적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논거를 가지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Seymour v. Blue Cross/Blue Shield 사건⁴³⁾에서 제10순회항소법원은 중재인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계약으로부터 끌어낸 것인 한 단순히 계약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더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인이 논증가능한 정도로 계약을 해석 또는 적용하고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동

40) 466 F. 2d 1125 (3rd Cir. 1972).

41) 784 F. 2d 902 (9th Cir. 1986)

42) 918 F. 2d 1215, 1218 (5th Cir. 1990)

43) 988 F. 2d 1020 (10th Cir. 1993)

하는 한 중재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Inter-City Gas Corp. v. Boise Cascade Corp. 사건⁴⁴⁾에서 제8순회항소법원은 중재인이 명백한 계약용어를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중재인은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고 권한 없이 행동한 것으로서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mployers Ins. of Wasau v. National Union Fire Ins. 사건⁴⁵⁾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중재인에 의한 계약해석이 그럴듯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의 본질에 근거한 계약해석의 개념은 법원이 계약해석의 면에서 중재판정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V. 맷 음 말

상사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형태에 있어서 첫째 형태인 중재판정의 자연적 정의의 요건 준수 및 중재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관하여는 국제중재법과 국내중재법 모두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둘째 형태인 중재판정의 시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관하여 국제중재법과 다수국가의 중재법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판정의 시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모든 상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재가 계약상의 분쟁해결조치이고 또한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당사자자치원칙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은 중재판정의 시비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당사자들이 희망하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뒤따르게 된다.

상사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사유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 13조는 11가지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중재법 제13조 a항은 4가지 중재판정 파기사유

44) 845 F. 2d 154 (8th Cir. 1988)

45) 933 F. 2d 1481 (9th Cir. 1991)

를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들 가운데 1개를 제외한⁴⁶⁾ 모두가 연방중재법 제13조 a항에 중재판정 파기사유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중재판정 파기의 소에서 판례법상의 파기사유들을 계속 원용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연방순회항소법원들이 엄청나게 부정확한 사실인정이나 또는 오류가 있는 법률이나 계약용어의 해석에 근거한 상사중재판정을 파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의 파기사유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엄청난 오류가 있는 상사중재판정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연방순회항소법원들이 채택하고 있는 판례법상의 중재판정 파기사유들 가운데 '법률의 명백한 무시'와 '공서양속'의 2가지 사유는 어느 정도 법률학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전자는 미국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3호에 의하여 중재인의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이 되며, 후자는 상사중재계약을 규율하는 보통법상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2가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법상의 중재판정 파기사유들은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 또는 관련 법률이론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판정의 파기가 인정되는 상황에 관하여 하급법원과 상사중재 변호인간에 혼란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상사중재절차에서 정확한 판정이 나오도록 보장하는 임무는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제하는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의 운영에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주의깊게 규정하고, 유능하고 통찰력 있는 중재인을 주의깊게 선정하고, 또한 중재심문에서 그들의 사건을 능숙하게 진술함으로써 그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46)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명백하게 연방중재법 제10조 a항에 규정된 4가지 중재판정 파기사유 이외에 판례법상의 파기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Remmey V. Painewebber Inc., 32 F. 3d 143 (4th Cir. 1994).

【참고 문헌】

-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90.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 김갑유, "미국 연방중재법에 관한 소개", 중재 제279호, 대한상사중재원, 1996.
- 이강빈,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제상사분쟁 중재 및 조정법에 관한 고찰", 중재 제28호, 대한상사중재원, 1997.
- 이정일, "미국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의 법원으로부터의 자주성", 중재학회지 제6권, 한국중재학회, 1996.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 및 상사중재규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1994. 11.
- Schmitthoff, Clive M., "Fi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Judicial Review", Clive M. Schmitthoff's select Essays o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Chia-Jui cheng,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 Hayford, Stephen L. and Scott B. Kerrigan, "Vacatur . The Non-Statutory Grounds for Judicial Re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Dispute Resolution Journal,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October 1996.
- Holtzmann, Howard M., "United States",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 Herrmann, Gerold, "Adopt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Law", 한국중재학회 초청강연회, 1997. 10. 25.
- Caron, David D.,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Disput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1996
- Kanowitz, Leo, Cases and Material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Publishing Co., 1990.
- Nolan-Haley, Jacqueline 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Publishing Co., 1991.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rbitration and the Law,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1993.
- Werner Publishing Co., World Trade and Arbitration Materials, Vol. 9 No. 5, September 1997.
- United Nation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94